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가족돌봄휴가 승인 및 사용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■■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■과는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(16시간)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어린이집 등의 휴업·휴원·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학부모 알림장, 가정통신문,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,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 자녀 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■과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거나, 유급 가족돌봄휴

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신청·승인·사용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■■■■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■■■■과장은

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지급된 연가보상비 132,25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